

#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제2차(연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면접심사) 합격자 공고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제2차(연장)  
기간제근로자(디지털전담)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1.

(고양시청소년재단)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 최종합격자 명단

### □ 최종합격자

직종	채용분야	채용인원	2차심사 합격인원	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성명	휴대폰뒷자리
기간제 근로자	디지털미디어 피해회복청소년 전담상담사	1명	1명	26-2-디지털-2	정○○	2710
				※ 예비합격자 없음		

## 2. 임용안내

- 대상자: 최종합격자 1명
- 합격자등록기간: 2026. 3. 12.(목) ~ 2026. 3. 14.(토)
- 장소: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사무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 등록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급여통장 사본 1부
- 이력서 기재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병역사항 해당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온라인)

### 3. 합격자 임용

- 임용예정일: 2026. 3. 16.(월)

### 4. 기타 유의사항

-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 기간 내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재)고양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등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본 기관에서 통보한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임용 대상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 ☎ 031-995-4250

### 5. 채용서류 반환청구 관련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미신청자의 서류는 반환청구기간 이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단 채용공모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제출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osb0313@gcyf.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메일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031-995-4250**)
4. 재단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3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청소년재단 귀중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